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
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통일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경기도 고양시, 양주시, 동두천시, 포천시 및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와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이 유사한 경기도 가평군 및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가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(2025.3.11.)으로 접경지역에 추가됨에 따라 「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북한 인접지역에도 경기도 가평군 및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를 추가하여 평화경제특별구역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북한 인접지역 시·군에 경기도 가평군,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를 추가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협의 이전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 : 입법예고 이전
3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이전

대통령령 제 호

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1호 중 “포천시”를 “포천시, 가평군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춘천시”를 “춘천시, 속초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인접지역의 범위) ① (생략)	제2조(인접지역의 범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2조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·군을 말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
1. 경기도: 고양시, 양주시, 동두천시, <u>포천시</u>	1. ----- --- <u>포천시, 가평군</u>
2. 강원특별자치도: <u>춘천시</u>	2. ----- <u>춘천시, 속초시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통일부 당국사업운영과	
연 락 처	(02) 2076 - 1072